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3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고자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 및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회의 소집과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10. 6. ~ '20. 10. 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예방조치·재난응급조치·안전점검·재난상황관리·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